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5 선고 2021나509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현중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권우상

변 론 종 결 2022. 3. 8.

판 결 선 고 2022. 4. 5.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8가단5261028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D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4,670,66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670,6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피고가 항소이유로서 새롭게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제1주장: 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서 ‘2009. 8. 20. 체결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계약’이라고 주장하였고, 피고도 답변서 등에서 협의분할 시기를 2009. 8. 20.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 할 것인바, 위 2009. 8. 20.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제2주장: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는 상속인의 특별수익 등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자백간주가 성립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툼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백간주가 성립하지 않고(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참조), 명백히 다투었는지는 변론종결 당시의 상태에서 당사자의 변론을 일체로 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다19758 판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상속재산분할협의 시기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 되어, 원고가 그 일자를 확인하기 위해 2019. 7. 10.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한 후 그 회신자료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2019. 7. 24.자 회신자료 중 70, 71쪽)를 갑 제6호증으로 제출하면서 그 일자를 2016. 3. 24.로 주장한 이상, 원고가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자백간주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채무자인 D의 특별수익 등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피고가 피상속인의 부양을 위해 지출한 내역으로 을 제5 내지 9호증을 제출하였지만, 이는 채무자가 아니라 피고의 기여분 산정에 관한 자료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곤, 판사 이흥관 병가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 판사 윤동연

-별지목록-

부동산의 표시

1. 광주광역시 남구 전 594 평방미터2. 광주광역시 남구 대 420 평방미터3. 광주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위 지상

세멘트벽조 세멘기와지붕 단층주택

59.00 평방미터

부속건물

세멘트벽조 세멘기와지붕 단층 대문, 우사, 돈사

27.31 평방미터

4. 광주광역시 남구 대 275 평방미터5. 광주광역시 남구 대 19 평방미터

